

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19호서식]

(앞면)

조사공무원증		
소 속		
직 위	사 진 (3cm×4cm)	
직 급		
성 명		
유효기간 부터 까지 위 사람은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34조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업무현황이나 관련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.		
년 월 일		
국토교통부장관 [인]		

85mm×65mm[인쇄용지(특급) 120g/㎡]

(뒷면)

-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34조(보고·조사) ①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의 안전점검등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·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- 제65조(벌칙) ① 생략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1. 생략
2. 제34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3. ~ 7. 생략